##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16 발의연월일: 2022. 2. 9.

발 의 자:이헌승·김승수·김은혜

김태흠 • 박덕흠 • 박성민

서병수 · 안병길 · 유의동

이양수 • 이주화 • 전봉민

하영제 • 황보승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 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 (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 2. 드론 관련 보험가입·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 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 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 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u>"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u>
	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 드론 관련 보험가입・보험
	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u>3.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u>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
	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
	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u>관한 정보</u>
	4.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
	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5.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

지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 획,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 보

- 6.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